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레이와 3년 12월 23일 갱신
 (레이와 4년 1월 28일 일부 갱신)

상담창구 일람

여러분 모두의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도록 각종 상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여 주십시오.

P.5
~6

돈 (생활비와 사업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긴급소액자금 · 종합지원자금(생활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계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금

P.7
~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인해 휴업이나 실업 등을 하여 생활자금으로 고민하는 분에 필요한 생활 비용 등의 대출을 시행합니다.

또한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이 완료된 가구나 재대출 승인을 못 받은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레이와 4년 1월 이후 긴급소액자금 및 종합지원자금(첫 회)의 대출이 끝난 대상 가구도 포함합니다.

● 육아 가구를 위한 임시특별급부

P.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이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가운데, 국내의 아이들을 힘써 지원하고 그 미래를 개척하는 관점을 가지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아이 한 명당 10만엔 상당을 지급합니다.

●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을 위한 임시특별급부금

P.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과 생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에 한 가구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 학생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급부금

P.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 등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합니다.

● 사업 되살리기 지원금

P.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견, 중소,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에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사업 규모에 맞춰 사업 되살리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일본정책 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공고 등이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대출 등

P.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사업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등에 실질 무이자 · 무담보로 용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긴급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사회 보험료 외에 국세 및 공공요금 등의 지불·납부 유예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14
~17

●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에 따른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을 특례로 다음 달부터 개정할 수 있습니다.

P.18

● 생활 궁핍자 자립 지원 제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P.19

● 주거 확보 급부금 (집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 등을 동반한 소득 감소 등 때문에 주거지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 등에 주거확보 급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확보를 지원합니다.

P.20

● 상환면제 조건부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자금 대출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분들에 주거지를 빌리기 위한 필요 자금을 대해, 상환면제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P.21

● 생활 보호 제도

현재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에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 수준에 맞춰 생계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P.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일이 감소한 경우

● 상병 수당금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쉴 경우 휴업 4일 이후부터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P.23

● 휴업 수당

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 회사는 휴업 기간 동안 휴업 수당 (평균 임금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P.24

● 고용 조정 조성금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 활동의 축소를 강요당한 사업주에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휴업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합니다.

P.2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 ·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 지시를 받고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 및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P.26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제도 도입 조성금, 양립지원 등의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 취득 지원 코스)**

P.27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로 휴업이 필요한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취득 시킨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 **양립 지원 등 조성금(간호 이직 방지 지원 코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특례))**

P.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서 가족을 간호 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간호 휴업법에 근거한 간호 휴업과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취득하여 간호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 **산업 고용 안정 조성금**

P.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활동을 부득이하게 일시 축소한 사업주가 재정 파견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본사(파견을 보내는 기업)와 파견처 양쪽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 **시범고용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단시간) 시범 코스)**

P.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이직자로, 취직 경험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분의 조기 재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원칙 3개월) 시범고용을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범고용 기간 중 발생한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을 찾을 경우

- **고용보험 기본수당(구직자 급부)**

P.32

이직 한 분(구직자)이 안정된 생활을 보내며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부입니다. 피보험자 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이직 전 임금의 50%~80%를 지급합니다.

※구직자 본인이 '구직 신청'을 해야 하므로 우선 헬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

P.33

고용 보험을 수급하면서 무료(교과서비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구직자 지원 훈련**

P.34

고용 보험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는 무료(교과서비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하면서 요건에 해당하면 월액 10만엔의 수강 수당 등의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직업 훈련 촉진급부금**

P.35

한부모가정분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는 동안의 생활비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생활 지원을 위한 안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 등에 따라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고용주용)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 등으로 해당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보호자(정규직, 비정규직 무관)'에 유급(임금 전액 지급) 휴가(노동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함)를 취득하게 한 고용주를 지원합니다.

P.36

●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지원금(개인 위탁 사업자용)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 등으로 해당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개인 위탁 사업자(보호자)'에 업무를 하지 않은 날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P.37

●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의 임시 휴교를 한 경우,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이용할 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하는 지원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분도 이용 가능합니다.

P.38
~39

그 외 관련 정보

코로나 관련 지원책 등이 게재된 웹페이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P.40
~41

상담 창구 일람①

여러분 한분 한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일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헬로워크** 【TEL : 가장 가까운 헬로워크로 전화 주십시오】

일을 찾는 분은 가까운 헬로워크에 상담해 주십시오. 채용 정보는,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소개 등은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육아 중인 여성분 등은 '마더즈 헬로워크', '마더즈 코너'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아동 동반 손님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각 담당자가 직업상담과 직업소개를 면밀하게 합니다. 또한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구인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소하신 분들 중 주거·생활지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는, 지원제도안내 등 필요한 상담도 받습니다. 코로나 대응 스텝업 상담 창구 등 각종 전문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노동 문제 (해고·고용 중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특별 노동 상담 창구 등** 【TEL : 가장 가까운 창구로 전화 주십시오】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특별 노동 상담 창구'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해고·고용중지·휴업 수당 등의 노동 상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정이 취소되거나 취직 시기가 연기된 모든 분을 위해 신규 졸업자 응원 헬로워크에 '신규 졸업자 내정 취소 등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방문없이 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싶을 때

● **정신보건 복지 센터 등** 【TEL : 가장 가까운 센터로 전화 주십시오】

보건사·정신보건 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면담이나 전화로 코로나에 대한 불안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의 고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정신 건강·포털 사이트 「고코로노 미미」**

직장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 카운슬러 등이 메일, 전화, SNS로 정신 건강 컨디션, 과로에 의한 컨디션 저하 등의 건강 상담도 접수합니다.



DV(가정폭력) 및 육아의 고민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DV 상담 안내** 【TEL:#8008】、**DV 상담+(플러스)** 【TEL:0120-279-889】

배우자 등의 폭력(DV) 관련 고민을 상담 할 수 있습니다. DV상담 안내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창구로 연결됩니다. DV상담+는 24시간 전화 상담, SNS·메일로도 대응합니다.



● **아동 상담소·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

【TEL:가장 가까운 아동 상담소 혹은 아동 상담소 학대 대응 전화 「0120-189-783」로 전화주십시오.

육아의 고민이나 학대 상담 등에 대한 상담은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상담하고 싶을 때

● **거주지 고민 상담처 스마코마** 【TEL:0120-050-593】

오늘 당장 갈 곳이 없다거나 집세를 낼 수 없는 등 '거주지 관련 고민'은 전화나 웹사이트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일람②

생활고를 느끼는 등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싶을 때

- **동반 핫라인(전화 등을 통한 상담) [TEL:0120-279-338]**
어떤 분의 어떠한 고민에도 함께하며 해결법을 찾아드립니다.
(상담 일례)생활의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분, DV·성폭력 등을 상담하고 싶은 분, 외국어로 상담하고 싶은 분 등
- **LINE, Twitter, Facebook 등의 SNS 또는 전화 상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생활고를 느끼는' 등 고민 상담을 접수합니다.



성범죄·성폭력에 대해 상담하고 싶을 때

-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탑 지원 센터**
전국 공통 단축번호 [TEL:#8891]
성범죄·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장 가까운 원스탑 지원 센터에 연결됩니다.
성범죄·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Cure time (큐어 타임)**
성폭력 고민에 대해 나이과 성별을 불문하고 익명으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상담 접수: 월·수·토요일 17시~21시)



부당한 차별, 편견, 따돌림 등을 상담하고 싶을 때

- **인권상담 창구 [TEL:0570-003-110]**
법무성의 인권옹호기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부당한 차별, 편견, 따돌림 등의 피해를 받은 분들의 인권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곤란에 처해 상담하고 싶을 때

- **FRESC 문의처 [TEL:0120-76-2029]**
FRESC(프레스크) 문의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실직을 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상담을 전화로 해드립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스템과 일본 재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경우 전화 주십시오.
- **외국인 재류 종합정보센터**
[TEL:0570-013904 (IP, 해외에서 전화:03-5796-7112)]
여러분의 입국수속이나 재류수속 등에 관한 각종 문의를 받습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한 문의는 일본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모를 때

- **행정 상담 접수창구 [TEL:0570-090110]**
총무성의 행정상담은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 요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 실현을 촉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한 상담이나 담당 행정의 불명확해 누구한테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 여러 곳의 행정기관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각 도도부현 상담창구 안내**
총무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각종 지원조치나 상담창구 등에 대해 전국 47곳의 도도부현 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약 150개의 지원 제도나 창구 중에서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자동응답 기능 챗봇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긴급 소액 자금 · 종합 지원 자금 (생활비)

각 도도부현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는 신종 코로나감염증의 영향에 의한 휴업이나 실업 등으로 생활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례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레이와 4년 3월말까지 신청 접수)

■ 긴급 소액 자금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신 분 [주로 휴업하신 분])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소액의 비용을 대출합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휴업 등으로 소득 감소하여 긴급히 그리고 일시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휴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자가 됩니다.

대출 한도액	20만엔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한	2년 이내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 종합 지원 자금 (생활의 재건이 필요한 분 [주로 실업하신 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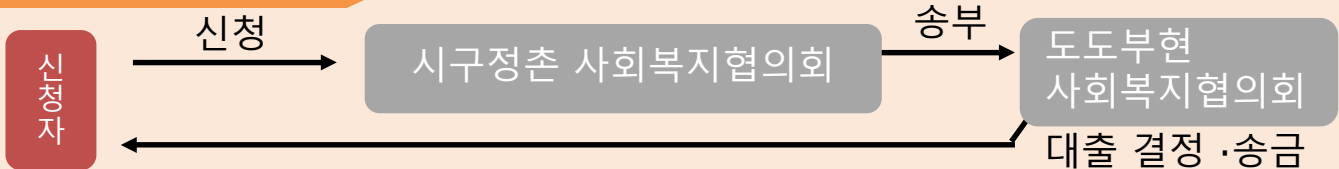
생활이 재건 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대출합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수입 감소와 실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고 일상 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가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가 있으면 실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상이 됩니다.

대출 한도액	(2인 이상)월 20만엔 이내 (대출기간 : 원칙 3개월 이내) (단신) 월 15만엔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한	10년 이내
대출이자 · 보증인	무이자 · 불필요

- ※1 이번 특별조치로 새롭게, 상환 시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소액자금은 레이와 3년도 또는 레이와 4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확인하여 일괄 면제해 드립니다. 종합지원자금은 ①최초 대출금은 긴급소액자금과 같이 레이와 3년도 또는 레이와 4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확인 ②연장 대출금은 레이와 5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확인 ③재대출금은 레이와 6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확인하여 각각 일괄적으로 면제해 드립니다. 주민세 비과세 가구 확인 대상은 채무자 및 세대주입니다)
- ※2 종합지원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상환 개시일까지 자립 상담 지원 기관에서 지원을 받겠다는 동의를 함으로써 대출을 시행합니다.
- ※3 레이와 4년 12월 말 이전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은 상환 개시 시기를 레이와 5년 1월말까지 연장합니다.

대출 수속의 절차



- 일반적인 문의는 상담 콜센터로
0120-46-1999 ※ 평일 9:00~17:00
- 생활 지원 특설 홈페이지(특례 대출)는 [여기로](#)
-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의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로 전화 주십시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많은 도도부현 · 지정 도시 사협의 홈페이지에 '링크집' 또는 '시정촌 · 구 사협회 일람 (명부)'으로 시구정촌 사협 HP를 게재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게재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하여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계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금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대해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이 만료된 가구와 재대출 승인을 못 받은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계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생계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금

대상자 긴급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가구(※)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을 다 받은 가구 /레이와 4년 3월까지 다 받는 가구
-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 승인을 못 받은 가구
- 종합지원자금의 재대출을 상담했으나 신청까지 못 간 가구
(레이와 4년 1월 이후, 상기를 제외한 긴급소액자금 및 종합지원자금의 첫 대출을 다 받은 가구/레이와 4년 3월까지 대출을 다 받는 가구가 대상)

(1) 소득요건

소득이 ①②의 합산액을 넘지 않을 것(월액)

- ①시정촌민세 균등할 비과세액의 1/12
- ②생활보호 주택부조 기준액

(2) 자산요건

예금 액수가①의 6배 이하일 것(단 100만엔 이하)

(3) 구직 활동 등 요건

다음 중 한가지 요건에 해당할 것

- 헬로워크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마련한 공적인 무료직업소개 창구에 구직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에 성실하고 열심히 행할 것
- 취직에 의한 자립이 어렵고 본 급부금 지급이 끝난 뒤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 신청을 할 것

지급액
(월액)

1인 가구: 6만엔, 2인 가구: 8만엔, 3인 이상 가구: 10만엔

※ 주거확보 급부금, 한부모가정 임시 특별 급부금,
저소득층 자녀부양 가구 생활지원 특별급부금과 병행한 급부가 가능

지급시기

신청 달부터 3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계지원 대상자 자립 지원금의 지급이 끝난 분에 대해 3개월간 재지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접수는 레이와 4년 3월말까지)

신청장소 · 신청방법

신청 창구나 방법은 거주지의 자치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이 지원금에 관한 문의는 **아래 콜센터에서 접수합니다.**

0120-46-8030 ※ 평일 9:00~17:00

● 생활지원 특설 홈페이지는 **이곳입니다.**



육아 가구를 위한 임시특별급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이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가운데, 국내의 아이들을 힘써 지원하고 그 미래를 개척하는 관점을 가지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아이 한 명당 10만엔 상당을 지급합니다.

대상

아동 양육자의 연봉이 960만엔 이상(주1)의 가구를 제외한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주2)

(주1) 부양가족 등이 아동 2명과 연봉 103만엔 이하를 받는
배우자가 기준이 됨

(주2) 헤이세이 15년 4월 2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지급내용

아동 한 명당 10만엔 상당

	5만엔 선행 급부	추가로 5만엔 상당의 급부
개요	·아이 한 명당 현금 5만엔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자치체의 판단에 따라 ·선행분의 5만엔 지급과 추가분 5만엔 상당의 쿠폰을 지급 ·선행분 5만엔 지급과 추가분 5만엔 지급을 합치는 것 외에 ·연내 선행분의 5만엔 지급과 함께 현금 10만엔을 일괄로 지급할 수도 있음
급부 기간	·중학생 이하의 아동은 연내로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등학생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을 시작합니다.	·시구청촌마다 준비가 되는 즉시 지급합니다.
실시 주체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i ● 급부금의 구체적인 수속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문의를 위해 콜센터를 마련했습니다.

0120-526-145

접수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토, 일, 공휴일 포함 12/29~1/3휴일)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을 위한 임시특별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신속하게 생활과 생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에 한 가구당 10만엔을 지급합니다.

■ 대상

① 가구 전원이 레이와 3년도 분 주민세 균등액이 비과세에 해당하는 가구

※ 주민세가 과세된 자의 부양 가족 등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함

② ①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가계 상황이 급변하여 ①의 가구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된 가구(가계 급변 가구)

■ 지급액

한 가구당 10만엔

■ 지급 시기

시구청촌마다 준비가 되는 즉시 지급합니다.

■ 실시 주체

시정촌(특별구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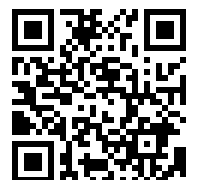


● 급부금의 구체적인 수속은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문의를 위해 콜센터를 마련했습니다.

0120-526-145

접수시간 : 오전 9시~오후 8시(토,일,공휴일 포함 12/29~1/3휴일)



학생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 등의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 일률적으로 10만엔을 지급합니다.

대상 학생

국공립사립대학(대학원을 포함) · 전문대학 · 고등전문학교 ·
전수학교(기술학교)전문과정
법무성 고지로 지정된 일본어교육기관 학생※유학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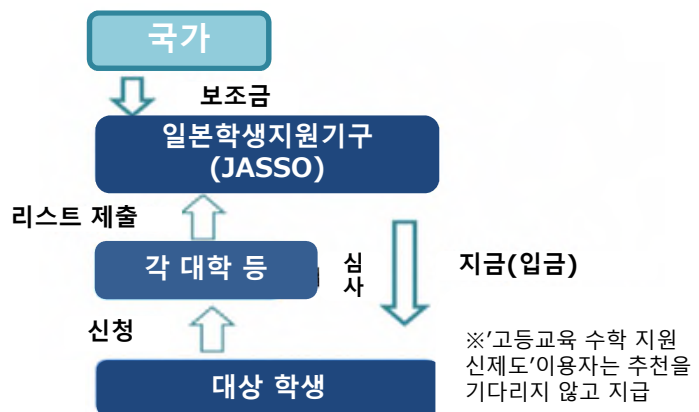
지원 대상의 학생 요건

- ① '고등 교육의 학업 지원 신제도(지급형 장학금)'이용자(신청 불필요)
- ② 상기 ①외,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서 대학 등이 추천하는 자
 - 원칙적으로 자택 밖에서 생활할 것
 - 가정에서 고액의 송금을 받지 않을 것
 - 가정의 수입 감소 등으로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아르바이트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을 것
 - 제1종 장학금(무이자 장학금)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것 또는 이용할 계획이 있을 것
- ③ 상기 ②를 고려한 후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등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대학 등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지급액

10만엔

지급 절차



※'고등교육 수학 지원 신제도'이용자는 추천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

i

- 급부금의 구체적인 수속은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 등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되살리기 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견, 중소,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에 2022년 3월까지 사업을 재건할 수 있도록 지역 및 업종을 불문하고 고정비 부담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5개월 분의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자

하기①과 ② 모두에 해당하는 중견, 중소 법인, 개인 사업주 등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른 수요의 감소와 공급의 제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

② ①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의 사업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해당 월의 매출이 기준 기간의 동월 대비 50%이상 또는 30%이상 50%미만 감소할 것

급부액

$(\text{기준 기간 } ※1 \text{의 매출액}) - (\text{대상월 } ※2 \text{의 매출액}) \times 5$

※1 '2018년 11월~2019년 3월', '2019년 11월~2020년 3월', '2020년 11월~2021년 3월'의 해당 기간

(대상월을 판단하기 위해 매출액 비교에 사용된 달(기준월)을 포함한 기간일 것)

※2 2021년 11월~2022년 3월에 해당하는 달

(기준기간의 같은 달과 비교해서 매출이 50%이상 또는 30%이상 50%미만 감소한 달이 있을 것)

상한액


매출액 감소율	개인 사업주	법인		
		연간 매출액※ 1억엔 이하	연간 매출액※ 1억엔 이상~ 5억엔	연간 매출액※ 5억엔 이상
▲50% 이상	50만엔	100만엔	150만엔	250만엔
▲30% ~50%	30만엔	60만엔	90만엔	150만엔

※기준월(2018년 11월~2021년 3월 사이 매출액 비교에 사용된 달)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신청기간

2022년 1월 31일~2022년 5월 31일

- **급부금의 자세한 수속은 사업 되살리기 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신청자 전용】 0120-789-140 (※ I P전화 전용 : 03-6834-7593)**
(접수 기간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매일 8:30~19:00)



일본정책 금융공고 및 오키나와 진흥개발 금융공고 등이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대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주 등에 대해,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로 용자를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대출'과 '특별이자 보급 제도'를 병용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무이자화를 실현하여 사업 자금의 자금 융통 지원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대출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최근 1개월의 매출액 또는 과거 6개월(최근 1개월을 포함))된 평균 매출액이 과거 4년의 어느 해의 동기 대비 5%이상 감소하는 등)한 사업자(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에 대해 신용이나 담보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리로 용자 후 3년간 0.9%의 금리 인하를 실시합니다.

※개인 사업주(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해 소규모에 한정됨)의 경우, 영향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설비자금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영향으로 필요한 자문에 한함 **담보** | 무담보

대출기간 | 설비 20년 이내, 운전 15년 이내 **그 중 거치 기간** | 5년 이내

용자한도액 (별도 기준) | 중소기업·상공조합중앙금고 6억엔

국민사업 8,000만엔

금리 | 최초 3년째까지 기준 금리▲0.9%, 4년째부터 기준 금리

(금리 인하 한도액: 중소기업 · 상공조합중앙금고 3억엔

국민사업 6,000만엔)

● 평일 상담

일본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 : 0120-154-505 상공조합 중앙금고 상담

창구 : 0120-542-711 오키나와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 : 0120-981-827

● 토요일 상담

일본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 : 0120-154-505 상공조합 중앙금고

상담창구 : 0120-542-711 오키나와 공고 사업자금 상담 다이얼 : 0120-981-827

● 그 외 자금융통 등에 관한 상담

중소기업 금융상담 창구 : 0570-783183 (평일 9:00~17:00)

특별 이자 보급 제도

- ▶ 일본 정책 금융 공고 등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 개인 사업주(사업성이 있는 프리랜서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이자 보급을 실시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지원합니다.

이자 보급 기간 | 대출 후 최초 3년간

이자 보급 대상 상한 | 중소기업 · 상공조합중앙금고 3억엔, 국민사업 6,000만엔

● (독)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특별 이자 보급제도 사무국

0570-060515 (평일 · 휴일 9:00~19:00)

사회보험료 등의 유예①

■ 후생연금 보험료 등의 유예제도

납부 유예 특례를 받았던 사업주 등, 납부 유예 특례가 끝난 후에도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유예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납부 유예 특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등과 관련한 소득이 상당히 감소한 경우, 무담보·연체금 없이 1년간 납부를 유예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와 2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후생연금보험료 등이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연금사무소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 건강보험료에 관하여 전국건강보험협회에 가입한 경우 연금사무소에,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유예제도를 받은 경우,
○유예 기간 중 매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연체금이 연 8.7%에서 0.9%로 경감됩니다.
※레이와 4년 1월 1일 이후, 상기 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압류 및 환가 (매각 등 현금화)가 유예됩니다.

유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 1년 이내입니다.

○또한 1년의 유예 기간 내 납부가 곤란할 시 재정 등의 상황을 확인 후,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전제로 한 분할 납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담보 제공은 불필요합니다.

※노동보험료에도 같은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유예제도 혜택을 받았을 시 연체금이 면제) 문의처는 도도부현의 노동국입니다.

※국세, 지방세 또는 노동보험료 등에 유예 신청을 한 경우, 신청시의 신청서나 재산 수지 상황서 등의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일부 기재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가장 가까운 연금 사무소(아래 URL 또는 오른쪽 QR코드 참조)
<https://www.nenkin.go.jp/section/soudan/index.html>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②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간호보험의 보험료 (세금) 감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일정 정도 수입이 감소한 분 등에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및 간호보험의 보험료 (세금)의 감면 또는 징수 유예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지의 시구청촌 연금 사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조합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료 (세금)에 대해
⇒ 거주하는 시구청촌의 국민건강보험 담당과
(국민건강보험 조합에 가입하신 분은 가입되어 있는 조합)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보험료에 대해
⇒ 거주하는 시구청촌의 후기 고령자 의료 담당과
- 간호보험료에 대해
⇒ 거주지 시구청촌의 간호보험 담당과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 거주하는 시구청촌의 국민연금 담당과 또는 연금 사무소

■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의 특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레이와 2년 2월 이후에 수입이 줄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분

【내용】 개인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일부의 면제나 유예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시구청촌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 제출

※ 신청서류는 일본연금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를 위해 우편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접수 개시】 레이와 2년 5월 1일



● 문의처

· 일본연금기구 「연금 가입자 다이얼」 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TEL : 0570-003-004 ※ 050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는 03-6630-2525

· 시정촌의 국민연금 담당과 또는 연금 사무소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③

국세의 납부 유예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국세를 일시로 납부하기 어려울 시 세무서에 신청함으로써 '환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에 관한 상담 등은 '관할 세무서(징수 담당)'로 전화하시면 가능합니다.

【개별 사정의 예】

- ①재해로 인해 상당한 재산 손실을 본 경우 ②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 ③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경우 ④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

- ◆원칙상 1년간의 유예가 인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1년간 추가로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중 연체세가 경감(주) 또는 면제됩니다.
(주)통상 연 8.8% → 경감 후 연 1.0%(레이와 3년 중의 비율)
(주)통상 연 8.7% → 경감 후 연 0.9%(레이와 4년 중의 비율)
- ◆재산 압류 및 환가(매각)가 유예됩니다.

【리플렛은 QR코드 참조】



● 문의처

국세청 (다음 URL 혹은 오른쪽의 QR 코드 참조)

https://www.nta.go.jp/taxes/nozei/nofu_konnan.htm



지방세의 유예제도

1. 징수유예

납세자(가족 포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걸린 경우 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되는 등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할 시, 유예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사정의 사례】

- ①재해로 인해 상당한 재산 손실을 본 경우
- ②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에 걸린 경우
- ③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경우
- ④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경우

2. 신청을 통한 환가유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지방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환가유예 제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처

징수 유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 · 문의는 거주지의
도도부현 · 시구청촌에 부탁드립니다.

사회 보험료 등의 유예 ④

■ 전기·가스·전화 요금, NHK 수신료 등의 지불 유예 등

개인 또는 기업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의 영향으로 전기·가스·전화 요금·NHK 수신료의 지불이 어려우신 분에 대하여,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금의 지불 유예나 요금 미납에 의한 공급 중단 유예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도·하수도 및 공영 주택의 임대료 지불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그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유예 등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사업자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i ●문의처

전기·가스·전화 요금·NHK 수신료 지불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먼저 계약한 사업자에게 상담하여 주십시오.

전기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electric.pdf

가스 요금에 대한 대응 사업자 목록 (대응 예정 포함)

https://www.enecho.meti.go.jp/coronavirus/pdf/list_gas.pdf

NHK 수신료에 관한 상담 창구

https://pid.nhk.or.jp/jushinryo/corona_jushinryo.html

후생연금보험료 등의 표준 보수 월액의 특례 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한 분으로, 레이와 3년 4월부터 레이와 4년 3월 사이에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분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고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을 통상 수시개정(4개월째에 개정)에 상관없이 특례로 다음 달부터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특례 개정을 받으신 분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레이와 3년 9월부터 적용된 정시결정을 특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①】 (각각 (1)부터 (3)에 모두 해당하는 분)

1 레이와 3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분의 특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시간 단위 포함)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달이 생긴 분

(2) 보수가 현저히 감소한 달에 지급된 보수 총액(1개월분)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이미 설정된 표준보수월액에 비해 2등급 이상 내려간 분

※ 고정적 임금(기본급, 일급 등의 단가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3) 본 특례 조치에 따른 개정내용에 본인이 서면상 동의한 경우

※ 피보험자 본인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개정 후 표준보수월액에 기반하여 상병수당, 출산수당 및 연금액이 산출된 것에 동의한 것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검색하거나 오른쪽 QR코드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금기구 특례개정연장

검색

<https://www.nenkin.go.jp/tokusetsu/tokureikaitei.html>

【대상자②】 (각각 (1)부터 (3)에 모두 해당하는 분)

2 레이와 3년 8월부터 레이와 4년 7월 사이에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줄어든 분의 특례

상기 1과 같은 조건입니다.

3 레이와 2년 6월부터 레이와 3년 5월까지 휴업으로 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특례 개정을 받은 분의 특례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시간 단위 포함)을 해서 레이와 2년 6월부터 레이와 3년 5월까지 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특례 개정을 받은 분

(레이와 2년도의 경우, 정시 결정에 따른 보험자 산정의 특례를 받는 분을 포함, 휴업을 재개한 분을 제외)

(2) 레이와 3년 8월에 지급된 보수 총액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이 9월의 정시 결정으로 정해진 표준보수월액에 비해 2등급 이상 낮은 분

(3) 본 특례 조치에 따른 개정내용에 본인이 서면상 동의하고 있을 것(상기 1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검색하거나 오른쪽 QR코드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연금기구 특례개정 연장

검색

<https://www.nenkin.go.jp/tokusetsu/tokureikaitei2.html>

【대상이 되는 보험료】

휴업으로 보수가 급감한 달(3의 경우 레이와 3년 8월)의 익월 이후의 보험료가 대상이 됩니다.

※ 상기 1에 해당하는 경우, 레이와 3년 9월 말까지 신고한 분이 대상자입니다.

※ 상기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 레이와 3년 8월부터 12월까지를 급감월로 지정하는 분은 레이와 4년 2월 말까지, 레이와 4년 1월부터 3월까지를 급감월로 지정하는 분은 레이와 4년 5월 말까지 제출해야 대상자가 됩니다.

※ 모든 신청은 신고 기한 중 소급 가능하지만, 급여 사무의 복잡하나 연말결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을 하고자 할 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 수속에 대해】

월액변경서(특례 개정용)에 제기서를 첨부하고 관할 연금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관할 연금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창구 제출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 및 제기서는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본 특례조치는 대상자①과 ②가 각각 1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경우, 건강보험료의 표준보수월액 특례개정 신청은 건강보험조합에서 하여 주십시오.



연금
가입자 다이얼

0570-007-123(유료 콜센터)

03-6837-2913(050부터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거는 경우)

· 접수시간: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7시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생활 궁핍자 자립 지원 제도

다양한 문제로 인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순서(자립상담 지원사업)



지원 메뉴의 예

구직 지원 · 구직준비 지원

- 구직에 관한 조언이나 개별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또한 일하는데 불안을 느끼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서투르실 경우 워크숍이나 취직 체험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 개선 지원

- 가계 상황을 투명하게 하여 가계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출 알선 등을 합니다.
- 또는 임대, 세금, 공공요금 등의 체납이나 각종 급부 제도 등의 이용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 이직 등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로 주거를 잃은 분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에 구직활동 등을 임할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여 주거 임대 비용을 급부합니다.

일시 생활지원

- 주거환경을 잃은 분에 일정기간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의 시정촌과 자립 상담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창구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거 확보 급부금 (집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 등을 동반한 소득 감소 등 때문에 주거지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 등에 주거확보 급부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의 확보를 지원합니다.

주거 확보 급부금

지급 대상자

- ①이직·폐업 후 2년 이내의 분
- ②급여 등을 얻을 기회가 해당 개인에 책임이 있는 이유·해당 개인의 사정에 의하지 않고 감소하여, 이직이나 폐업과 동등한 상황에 놓인 분

지급기간 원칙 3개월(구직활동 등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경우는 3개월 연장 가능(최장 9개월까지))
※주거확보 급부금의 지급이 만료된 분에게 레이와 4년 3월 말 사이에 3개월간의 재지급을 가능하게 함(레이와 3년 2월 신청부터)

지급액 주택 임대료(단, 주택부조 특별 기준액을 상한으로 함)
(도쿄도 특별구 상한액의 예) 1인 가구: 53,700엔,
2인 가구: 64,000엔, 3인 가구: 69,800엔

지급요건

- 소득요건 : 가구소득 합계액이 ①과 ②의 합계액을 넘지 않을 것
①시정촌민 균등할이 비과세가 되는 소득액의 1/12
②주택 임대료(주택부조 특별 기준액이 상한)
(도쿄도 특별구의 기준) 1인 가구:13.8만엔, 2인 가구:19.4만엔, 3인 가구:24.1만엔
- 자산요건 : 가구 예금의 합계액이 상기①의 6개월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단, 100만엔을 초과하지 않은 액수)
(도쿄도 특별구의 기준) 1인 가구:50.4만엔, 2인 가구:78만엔, 3인 가구:100만엔
- 구직활동 등 요건:헬로워크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마련한 무료직업소개소의 창구에 구직 신청을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할 것
※지급 대상자②는 헬로워크 등에 구직 신청을 하지 않을 것
※또한 레이와 4년 3월 말까지 신청한 분에, 특례로 직업훈련수강 급부금과 주거확보 급부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함

등



● 일반문의 상담 콜센터

0120-23-5572 ※평일 9:00~17:00

● 생활 지원 특설 홈페이지(주거 확보 급부금)는 이곳에서

● 신청은 거주지의 시정촌의 자립 상담 지원 기관으로

전국 연락처 목록 <https://www.mhlw.go.jp/content/000614516.pdf>



상환면제 조건부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자금 대출

취업을 통한 자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분들에게 주거지를 빌리기 위한 필요자금에 대해 상환면제 조건으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 대상자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의 분

- ①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거나, 동등한 소득 수준을 가진 분
- ② 모자·부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책정을 받고, 자립을 위해 의욕적으로 노력하는 분

※ 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에 대해 개별 면접을 시행하여 각각의 생활 형편, 취업에 대한 의욕,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응 등의 상황 파악을 하고 개별에 맞는 지원 메뉴를 취합한 프로그램

■ 대출액

월 상한액 **4 만엔** × **12개월**

■ 상환면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취직할 경우 **일괄상환면제**



- 신청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도도부현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지정 도시 거주자는 시약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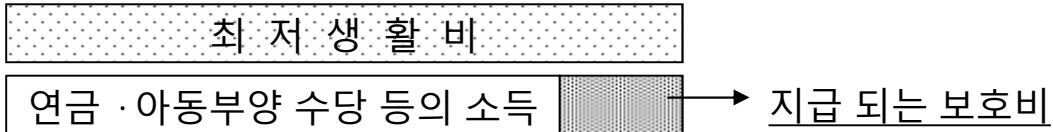
생활 보호 제도

생활 보호는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 수준에 맞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활보호 신청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생활보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자치체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생활보호는 자산, 능력 등 모든것을 활용 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한 보호가 이루어 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인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중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부동산,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보유가 인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할 수 없거나 취업하고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연금, 수당 등 사회 보장 급부 혜택을 활용해도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없다.
 -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은 우선으로 보호된다.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부부, 중학교 3 학년 이하의 아이의 부모는 중점적인 조사를 받는 대상자로 복지 사무소의 경우, 전문가가 원칙적으로 실제로 만나 부양 여부를 조사합니다. 기타 부양 의무자는 서면으로 조사합니다.
- ※필요한 생활비는 나이, 가구 인원수 등에 따라 정해져 (최저 생활비), 최저 생활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생활 보호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판단은 상기 외에 세세한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 자치체의 복지 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수속 절차

- 거주지의 자치체 복지 사무소 (생활 상담 등의 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보호 신청을 한 경우, 복지 사무소의 직원이 방문 조사, 자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 보호비 결정을 위한 심사를 합니다.
- 위의 심사를 실시해, 복지 사무소는 보호 신청을 한 후 원칙 14일 이내에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생활 보호 수급 개시 후

- 생활 보호를 받는 기간에 전문가가 일년에 수차례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전문가의 생활 지도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생활 보호 수급 중에는 소득 상황을 매월 신고하셔야 합니다 .
- 생활비 외에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 또한 필요한 의료비와 간호 비용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가게 상담 지원, 자녀의 학습 · 생활 지원, 취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치체를 제외).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사무소에서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의 자산 보유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담 희망자는 거주지의 자치단체의 복지사무소(링크 참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상병 수당금

상병 수당금은, 건강 보험 등의 피보험자가 업무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쉬는 경우, 소득 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되어,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각 증상은 없으나 검사 결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 판정을 받아 입원할 때
- 발열 등의 자각 증상이 있어 요양을 위해 일을 쉬고 있을 시에도 상병 수당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할 시 지급합니다.

- ① 업무 재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 요양을 위해 일할 수 없을 것
※ 업무 또는 통근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보험 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 ② 4일이상 일을 쉬고 있을 것
※ 요양을 위해 연속 3 일 휴식 후(대기 기간) ,
4일 이후부터의 휴무에 지급됩니다.
※ 대기 기간 중에는 유급 휴가, 토, 일, 공휴일 등의 공적 휴일을 포함합니다.

지급기간

지급을 시작한 날로부터 통산 1년 6개월간

※ 상병 수당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날에 맞춰 지급됩니다.

일당 지급액

상병 수당금의 지급 개시일이 속하는 달 이전의 최근 12개월간의 표준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30 분의 1 상당 액수의 3 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 지급된 급여의 금액이 상병 수당금의 지급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상병 수당금과 지불된 급여의 금액 차액분이 지급됩니다.

$$\text{지급총액} = \left(\frac{\text{최근 12개월 동안의 표준 보수 월액의 평균액의 30 분의 1}}{\text{표준 보수 월액}} \right) \times \frac{2}{3} \times \text{지급 기간}$$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가입하신 건강 보험의 보험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게 시구정촌에서는 규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감염된 피고용자에 상병 수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시구정촌에 문의하십시오.

휴업 수당 (노동기준법 제 26 조)

노동 기준법 제 26 조에서 회사는 회사에 책임이 있는 이유로 근로자를 쉬게 했을 경우,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 기간 동안의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휴업시킬 때 노동 기준법의 의무에 관계없이 고용 조정 조성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휴업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용 조정 조성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란

- ▶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시키는 경우 휴업 기간의 휴업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 ▶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회사에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휴업입니다.

①사업의 외부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일 것

②사업주가 통상의 경영자로서의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일 것

①에 해당하는 것은, 예를 들어 비상사태 선언에 의한 요청과 같은, 외부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②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는 휴업 회피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최대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 자택 근무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업무에 종사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

· 근로자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시켰는지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 만을 이유로 하여 일률적으로 휴업 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수당액

평균 임금 (휴업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 ※)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

※임금이 시급제나 일급제, 능률급 등으로 지불되는 경우 최저 보장액의 규정이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각 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 노동 상담 창구**에서 대응합니다.



고용 조정 조성금 (특례 조치)

고용 조정 조성금은 경제상의 이유로 사업 활동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일시적 휴업, 교육 훈련 또는 파견근무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도모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사업주

※매출 등 사업 활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최근 **생산 지표가 비교 대상 월과 비교해 5%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특례 조치

○ 조성내용 · 대상

※레이와 3년 5월 1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까지

- ① 휴업수당 등에 대한 조성률 **중소기업 4/5, 대기업 2/3**
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주1] [주3] 중소기업 9/10, 대기업 3/4
※조성액 상한 대상 근로자 1일 1인당 13,500엔
※레이와 4년 1, 2월은 11,000엔, 같은 해 3월은 9,000엔
- ②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 **중소기업 2,400엔, 대기업 1,800엔을 가산**합니다.
- ③ **신규 졸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지속적으로 고용된 기간이 6개월 미만
의 근로자도 조성 대상자입니다.
- ④ 1년간 100일의 지급 한도 일수와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의 휴업도 대상으로 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조성률 · 조성액을 인상합니다.

※레이와 3년 1월 8일 이후의 휴업 등에 적용

- ⑥ 긴급사태조치를 실시해야 할 지역,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실시해야 할 지역의
지사가 내린 기본적 대처방침에 따른 요청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등에 협력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 **조성률을 최대 10/10 [주2] 로** 인상했습니다.
※조성액의 상한 대상 근로자 1일 1인당 15,000엔
- ⑦ 생산 지표가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 월 평균치로 30% 이상 감소한
전국의 기업에 관해 **조성률을 최대 10/10 [주2] 로** 인상했습니다.
※조성액의 상한 대상 근로자 1인당 1일 15,000엔

[주1] 레이와 2년 1월 24일 이후 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레이와 3년 12월)

[주2] 레이와 3년 1월 8일 이후 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주3] 레이와 3년 1월 8일 이후 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레이와 4년 1월~)

○ 최저 임금 인상을 고려한 고용 유지를 지원

※ 레이와 3년 10월부터 레이와 4년 3월까지

- ⑧ 경기 특례 등의 대상자인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최저 시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경우, 지역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올해 10월부터 레이와 4년 3월까지
휴업 규모 요건을 불문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 요건의 상세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국 또는 헬로워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창구, 우송 또는 온라인)
- 콜센터에서 고용 조정 조성금에 관한 문의에 대응합니다.
0120-60-3999 (접수시간 9:00~21:00 (토일 · 공휴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 · 급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휴업을 한 근로자 중,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휴업지원금 ·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영향으로,

①레이와 3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에 의해 휴업을 한 중소기업의 근로자

②레이와 3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가 휴업 시킨 대기업의 교대 근로자 등 중, **휴업 기간 동안 임금(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분도 대상자입니다.

■ 지급액

휴업 전 임금의 **80%(일일 상한액 8,265엔)**

※레이와 3년 4월은 일일 상한액 11,000엔, 레이와 3년 5월부터 12월분까지는 일일 상한액 9,900엔

※ 긴급사태조치 또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지역 지사의 요청을 받아 영업시간 단축 등에 협력하는, 신종 플루 등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조가 정하는 시설(음식점 등)의 근로자에게 레이와 3년 5월 1일~ 레이와 4년 3월 31일 동안의 기간에 일일 지급 상한액이 **11,000엔**

※ 휴업 실적에 따라 지급

- 1일 8시간 근무가 3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근무시간이 감소한 경우에도, 1일 4시간 미만의 근로이면 1/2일 휴업한 분의 대상자**가 됩니다.
- 주 5회에서 주 3회 근무가 되는 등 **한 달의 일정 부분을 휴업한 것도 대상자**가 됩니다. (취업한 날 등을 휴업 실적에서 제외한 후 대상이 됩니다.)

■ 신청기한

대상자	휴업한 기간	신청기한 (우송할 시 필착)
①·②	레이와 3년 4월~12월	레이와 4년3월31일 (목)
①·②	레이와 4년 1월~3월	레이와 4년6월30일 (목)

○기존 신청분 지급(부지급) 결정에 시간이 걸려 차기 이후의 신청 기한이 끝난 분
→지급(부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 상세한 지급요건과 수속 절차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콜센터 (0120-221-276) 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휴업 지원금 · 급부금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접수시간 월~금 8:30~20:00 / 토, 일, 공휴일 8:30~17: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제도 도입 조성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용) 레이와 3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 관리 조치로서 휴업이 필요한 임신부 근로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취득하여 출산하고 출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취득시킨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대상자 (사업주)

①~④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지도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임신부 여성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한 연차 유급휴가 임금 상당액의 **60% 이상**이 지급되는 것에 한함)를 마련하고,

② 해당 유급휴가 제도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의 내용과 함께 **근로자에게 알린** 사업주이며,

③ **레이와 3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 사이에 해당 휴가를 **합 5일 이상** 취득하게 한 사업주

④ 본 조성금 신청까지 레이와 2년도 · 레이와 3년도의 '양립지원 등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 취득 지원 코스)' 및 레이와 2년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 취득 지원 조성금' 을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분도 대상자입니다.

■ 지급액

한 사업장당 1회 한정 15만엔

■ 신청 기간

대상 근로자의 유급휴가 합계 일수가 총 5일에 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레이와 4년 5월 31일까지

※각 사업장 단위로 신청합니다.

i ● 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경우, '양립지원 등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 취득 지원 코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자세한 지급 조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담 · 문의는 가까운 도도부현의 노동국 [고용환경 · 균등부\(실\)](#)로 부탁드립니다.

접수시간 : 8 : 30~17 : 15 (토일 · 공휴일 · 연말연시 제외)



양립지원 등의 조성금(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에 따른 **휴가 취득 지원 코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용) 레이와 3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로, 휴업이 필요한 임신부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휴가를 취득해 출산하고 출산후에도 계속적으로 활약 가능한 직장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유급 휴가제도를 마련하여 취득시킨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이 조성금은 레이와 3년도에 취득한 대상 근로자의 유급휴가 취득분(레이와 3년 4월 1일~레이와 4년 3월 31일)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기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여 주십시오.

■ 대상자(사업주)

①~③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레이와 2년 5월 7일부터 레이와 4년 3월 31일 사이에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지도에 따라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임신부 여성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연차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연차 유급휴가 임금 상당액의 **60% 이상**이 지급되는 것에 한함)를 마련하고,
- ② 해당 유급휴가 제도 내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모성 건강관리 조치의 내용과 함께 **근로자에게 알린** 사업주이며,
- ③ 해당 **휴가를 합 20일 이상 취득**하게 한 사업주

■ 지급액

대상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당: 28.5만엔

※ 한 사업소당 최대 인원수: 5 명까지

■ 신청기간

대상 근로자의 유급휴가 합계 일수가 총 20일에 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레이와 4년 5월 31일까지

※각 사업소 단위로 신청합니다.



● **자세한 지급 요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상담 · 문의는 가까운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 · 균등부(실)로** 부탁드립니다.
접수시간 : 8 : 30~17 : 15 (토일 · 공휴일 · 연말연시 제외)



양립 지원 등 조성금(간호 이직 방지 지원 코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특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가족의 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간호 휴업법에 따른 간호 휴업과는 별도로 특별한 유급휴가를 취득시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사업주)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으로 이용 가능한 **간호를 위한 유급의 휴가 제도 (※)** 를 마련하고 해당 제도를 포함한 업무와 간호의 양립 지원 제도의 내용을 **사내에 알린** 사업주
 ※소정 근로일의 20일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법정 간호 휴업, 간호 휴가, 연차 유급 휴가와는 별도의 휴가 제도여야 합니다.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대상 가족의 간호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업무를 쉬어야 하는 근로자가 ①의 휴가를 **총 5일 이상** 취득하게 할 것

지급액

취득 일수	지급액
총 5일 이상 10일 미만	20만엔
총 10일 이상	35만엔

대상 근로자

1 중소 사업주 당 5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평소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간호 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평소에 가족이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간호 서비스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이용을 삼가는 경우
- ③ 평소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가족을 간호할 수 없게 된 경우

적용일

레이와 3년 4월 1일~레이와 4년 3월 31일에 취득한 휴가

신청기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다음 날부터 기산해 2개월 이내

- 지급 요건의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문의처
 각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 환경·균등부(실)
 접수 시간 : 8 : 30~17 : 15(토, 일, 공휴일은 제외)

신종 코로나 간호 지원 양립 지원 등 조성금

검색

산업 고용안정조성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활동을 부득이하게 일시 축소
 소한 사업주가 재적파견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본사와
 파견처 양쪽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성금의 대상이 되는 '파견'

- 대상 : 고용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활동을 부득이하게 일시 축소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파견)
- 전제 : 고용 유지를 도모하려는 조성이기 때문에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 본래 사업소
 로 돌아가서 근무할 것

■ 대상자(사업주)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업 활동을 부득이하게 일시 축소하여
 근로자의 고용 유지 목적을 갖고 파견이라는 형태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를 파견처에 보내는 사업주(본사 사업주)
- ② 해당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사업주(파견처 사업주)

■ 조성률 · 조성액

- 파견 운영 경비
 본사 및 파견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교육훈련 및 노무관리에 관련한 조정
 경비 등 파견 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본사가 근로자의 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9/10	3/4
본사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고 등을 하고 있는 경우	4/5	2/3
상한액(본사 · 파견처의 합계)	12,000엔/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파견 조성률 : 중소기업 2/3, 중소기업 외 1/2

○ 파견 초기 경비

취업규칙과 파견계약서의 정비 비용, 본사 사업주가 파견을 보내기 전에 미리
 시행하는 교육 훈련, 파견처 사업주가 파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기나 비품 등의
 파견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본사	파견처
조성액	각10만엔/1인당(정액)	
가산액(※)	각5만엔/1인당(정액)	

※본사 사업주가 고용과잉업종 기업이나 생산성 지
 표 요건이 일정 수준 악화된 기업인 경우, 파견처 사
 업주가 근로자를 타업종에서 받아들일 경우에 조성
 액을 가산합니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파견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지급 요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
 시오.
-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국 또는 헬로워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창구
 또는 우송).
- 콜센터에서 산업고용안정조성금 관련 문의를 받습니다.
 0120-60-3999(접수시간 9:00~21:00(토일, 공휴일 포함))



시범고용 조성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단시간) 시범 코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이직자로 취직 경험이 없는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분의 조기 재취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원칙 3개월) 시범고용을 하는 사업주에 시범고용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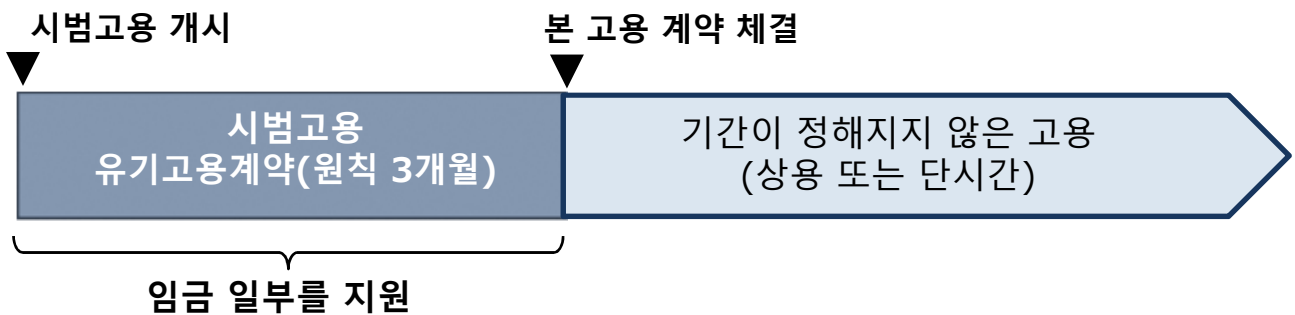
일자리 소개 시점에 하기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을 일정 기간(원칙 3개월) 시범고용을 하는 사업주

- ① 이직자(고용 시간의 감소로 실질적으로 이직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도 포함)
- ② 취직 경험이 없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

■ 조성 내용 등

본인 희망	소정 노동시간	지급액
상용고용	주 30시간 이상	월액 4만엔
단시간 노동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월액 2.5만엔

■ 조성 이미지



<참고 : 시범고용 조성금(일반 시범 코스)>

- 직업 경험 부족 등으로 안정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 **상용고용으로 이행하는 목적으로**, 일정 기간(원칙 3개월) 시범고용을 하는 사업주에, 월액 4만엔을 지원(30시간 미만은 조성 대상자가 아님).
 - ※ 2년 이내에 2회 이상 이직(離職)·이직(移職)을 반복한 분, 이직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분, 육아 등으로 이직하여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분, 55세 미만의 프리터족이나 니트족 등의 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생활보호 수급자 등)



- 자세한 지급 조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국 또는 헬로워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창구 또는 우송).



고용보험 기본수당(구직자 급부)

이직한 분(구직자)이 안정된 생활을 보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부입니다. 피보험자 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이직 전 임금의 50%~80%를 급부합니다.

※구직자 본인이 '구직 신청'을 해야 하므로 우선 헬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대상자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 우선 헬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이직한 상태에서 '취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언제든지 취직 가능한 능력(건강상태·가정환경 등)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임함에도 취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
-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2년 사이에 12개월 이상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
- 도산·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 정해진 기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외 부득이한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6개월 이상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는 분

수속

- 여러분의 주소를 관할하는 헬로워크에서 직접 구직신청 등을 하여 주십시오.
- ※ 수급수속을 할 시 사업주에게 받은 '이직표(離職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표를 못 받은 분일지라도 헬로워크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수급 수속을 할 수 있으므로 우선 헬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급부액

【1일당 급부액(기본수당 1일 액수)】

-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6개월간 매월 정해진 액수로 받은 임금 합계를 180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의 약 50%~80%로, 임금이 낮은 분일수록 높은 급부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수당 1일 액수에는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대략의 계산식

$$\frac{\text{이직 이전의 6개월간 임금 합계}}{180} \times (50\% \sim 80\%) \times \text{급부율} = \text{기본수당 1일 액수}$$

※ 60~64세 분에 45%~80%

【기본수당 급부 일수(소정 급부 일수)】

- 정년, 계약기간 만료나 개인 사정이 있는 분 90일~150일
- 도산·해고 등이나 노동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분 등 90일~330일
- 장애인 등 취직이 곤란한 분 150일~36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한 급부 일수 연장에 관한 특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분 등에게 상기 기본수당의 급부 일수를 원칙 60일(일부 30일) 연장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플렛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헬로워크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 자세한 요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또한 이직하신 분은 우선 가까운 헬로워크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

고용 보증을 수급하면서 무료(텍스트비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구직 중인 분으로 원칙적으로 하기 4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

- ① 헬로워크에 구직 신청 중인 분
- ② 고용 보험의 실업급부를 수급 중인 분
- ③ 노동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
- ④ 헬로워크가 직업 훈련 등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분

훈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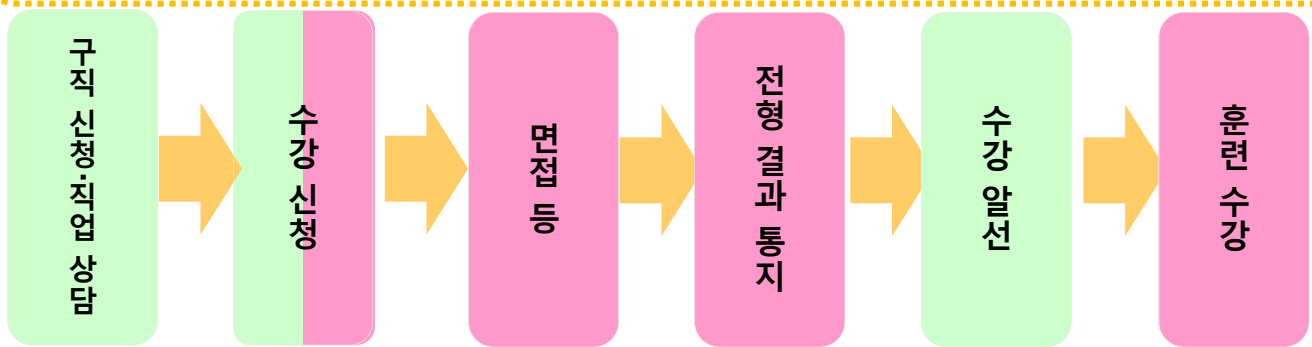
- ① 취직에 필요한 직업 스킬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② 훈련 기간은 대략 3개월~2년입니다 (1·2개월의 단기간 코스도 수시 개설).
- ③ 수강료는 무료입니다(텍스트비 등, 1~2만엔 정도의 실비만 필요합니다).
- ④ 국가, 도도부현,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 (도도부현의 위탁)이 훈련을 실시합니다.

수강 절차 . . . 먼저 헬로워크를 방문해 주세요!

공공 직업 훈련(이직자 훈련) 및 구직자 지원 훈련을 수강하려면 헬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한 후,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전형에 합격한 후, 헬로워크에서 수강 알선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강 알선은 헬로워크에서의 직업 상담을 통해

- ① 훈련 수강이 적격인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
 - ②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이 있다고 헬로워크가 판단한 분에 실시합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이직한 분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의 정보제공과 수강 알선 등을 한번에 시행하는 '코로나 대응 스텝업 상담 창구'를 각 헬로워크에 설치



..... 헬로워크에서의 절차

..... 훈련 실시 시설에서의 절차



-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신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훈련에 대해서는,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로 검색 가능합니다.
- 훈련 관련 상담은 주소지 관할 헬로워크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구직자 지원 훈련

고용 보증을 수급할 수 없는 구직자는 무료(텍스트비 등 실비만 부담)로 직업 훈련을 수강하면서 요건에 해당하면 월액 10만엔의 수강 수당 등의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 구직 중인 분으로 원칙적으로 하기 5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

- ① 헬로워크에 구직 신청을 한 분
- ②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분
- ③ 고용 보험의 실업급부를 수급하고 있지 않은 분
- ④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
- ⑤ 헬로워크가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분

※급부금을 수급하려면 추가로 아래 기재된 「급부금의 지급 내용·요건」에 기재된 요건에 해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 내용

- ① 조기 취직을 위한 훈련입니다.
- ② 훈련 기간은 2~6개월입니다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코스는 2주간부터(레이와 4년 3월 말까지의 특례)).
- ③ 수강료는 무료입니다(텍스트비 등, 1~2만엔 정도의 실비만 필요합니다).
- ④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훈련을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이 실시합니다.
- ⑤ 2 종류의 코스가 있습니다.
 - '기초 코스' : 사회인으로서의 기초적 능력이나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실천 코스' : 취직을 희망하는 직종의 직무 수행을 위한 실천적인 기능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수강 절차 : P.33를 참조하여 주십시오(공공 직업 훈련과 같습니다).

급부금의 지급 내용·요건

[지급액]

- 직업 훈련 수강 수당 : 월액 10만엔
 - 통근수당 : 훈련 시설까지 다니는 경로에 맞춘 소정의 금액(상한액 있음)
 - 기숙수당 : 월액 10,700엔
- ※'통근수당', '기숙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헬로워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 지급 요건]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

- 본인 소득이 월 8만엔 이하 (※)
 - ※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는 분, 자영업, 프리랜서, 부업·겸업을 하는 분 등으로 고정 수입이 월 8만엔 이하의 분 등은 본인 수입이 월 12만엔 이하(레이와 4년 3월 말까지의 특례)
- 가구 전체의 수입이 월 40만엔 이하(레이와 4년 3월 말까지의 특례)
- 가구 전체의 금융자산이 300만엔 이하



- 수당에 관한 자세한 요건이나 구체적인 절차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거주 지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헬로워크 인터넷 서비스로 검색 가능합니다.
- 훈련 상담은 가장 가까운 헬로워크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고등직업 훈련 촉진금부금

한부모가정분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등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는 동안의 생활비로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자

훈련 개시일 이후,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정의 분

- ①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거나 동등한 소득수준을 가진 분
- ② 양성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대상 자격증의 취득 등이 기대되는 분

■ 대상훈련

취직할 시에 유리한 자격증이며, 양성기관에서 6개월 이상 훈련한 분

(예) 간호사, 준(准)간호사, 보육사, 간호복지사, 물리요법사, 작업요법사, 조리사, 제과위생사 등의 국가자격증이나 **디지털 분야 등의 민간자격증**

■ 지급내용

훈련 기간 중 월액 **10**만엔

※주민세 과세 가구는 월액 70,500엔

※훈련기간 1년간에 한해 지급액을 **4**만엔 가산



●신청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도도부현 및 시구청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고용주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 등을 한 경우, 해당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의 휴직을 동반한 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비정규직 불문하고 유급휴가(노동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함)를 취득하게 한 고용주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사업주)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자로서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에 노동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유급(임금 전액 지급)휴가를 취득시킨 사업주.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임시 휴교 등(※)을 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

※초등학교 등 전교 휴교가 아닌 학년, 학급 단위의 휴교나 온라인 수업, 분산 등교의 예도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등 :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특별지원 학교, 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등 돌봄 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등

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 등 초등학교 등을 휴학해야 하는 아동

지급액

유급 휴가를 취득한 대상 근로자에 지불한 임금 상당액 $\times 10 / 10$

※레이와 3년 8월 1일~12월 31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일일 상한액 13,500엔

레이와 4년 1월 1일~2월 28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일일 상한액 11,000엔

레이와 4년 3월 1일~3월 31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일일 상한액 9,000엔

※신청하는 휴가 기간 중에 긴급사태선언의 해당 구역 또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실시해야하는 구역에 사업소가 있는 기업에는 지급 상한액을 1일당 15,000엔

적용일

레이와 3년 8월 1일~레이와 4년 3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유급 휴가

※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 등 수업 예정이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

신청기간

- 레이와3년 8월 1일~10월 31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 레이와3년12월 27일(필착)
- 레이와3년 1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 레이와4년 2월 28일(필착)
- 레이와4년 1월 1일~3월 31일까지의 휴가 취득분 ⇒ 레이와4년5월31일(필착)

i

● 지급요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신종코로나 휴가지원 検索



● 도도부현 노동국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 관련 관련 특별 상담창구'에서 '기업에 본 조성금이 쓰여지길 바란다' 등 근로자 분의 상담 내용에 맞춰 기업에 특별휴가제도 도입, 조성금 활용을 지원합니다. 특별 상담창구나 휴교 지원금, 급부금 시스템에 따른 근로자의 직접 신청은 이곳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일반적인 문의는

[고용조정조성금, 산업고용안정조성금,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 · 지원금 콜센터

0120-60-3999

접수시간 : 9 : 00~21 : 00 (토일·공휴일 포함)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지원금 (개인 위탁 사업자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 등을 한 경우 아동을 돌보기 위해 계약한 업무를 못하게 되었을 시, 개인으로 근로하는 보호자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개인 위탁 사업자)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

①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대응으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임시 휴교 등을(※) 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

※초등학교 등 전교 휴교가 아닌 학년, 학급 단위의 휴교나 온라인 수업, 분산 등교의 예도 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등 : 초등학교, 의무교육학교의 전기 과정, 특별지원 학교, 방과후 아동 클럽, 방과후 등 돌봄 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등

②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동 등이 초등학교 등을 쉬어야 하는 아동

일정 조건

- 개인적으로 업무를 할 예정이 있던 경우
- 업무위탁계약 등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보수가 지불되어, 발주자가 업무 내용, 업무를 하는 장소와 일시 등 일정한 지정을 받은 경우

지급액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날이

레이와 3년 8월 1일~12월 31일⇒ 1일당 6,750엔(정액)

레이와 4년 1월 1일~2월 28일⇒ 1일당 5,500엔(정액)

레이와 4년 3월 1일~3월 31일⇒ 1일당 4,500엔(정액)

※신청하는 업무를 못 한 기간중에 긴급사태선언의 대상 지역 또는 만연방지 중점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지역에 거주지가 있는 분은 1일당 7,500엔(정액)

적용일

레이와 3년 8월 1일~레이와 4년 3월 31일

※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 등 수업 예정이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

신청기간

업무를 못한 날이

● 레이와 3년 8월 1일~10월 31일 ⇒ 레이와 3년 12월 27일까지(필착)

● 레이와 3년 11월 1일~12월 31일 ⇒ 레이와 4년 2월 28일까지(필착)

● 레이와 4년 1월 1일~3월 31일 ⇒ 레이와 4년 5월 31일까지(필착)



● **지급요건과 구체적인 수속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문의는**

고용조정조성금, 산업고용안정조성금, 초등학교 휴교 등 대응 조성금·지원금 콜센터

0120-60-3999 에서 받습니다.

접수시간 : 9 : 00~21 : 00 (토일·공휴일 포함)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

(특례조치 : 기업에 종사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초등학교 등이 임시 휴교 등을 하게 된 경우, 기업에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 이용 요금을 보조합니다.

■ 대상자

이하의①~③에 해당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자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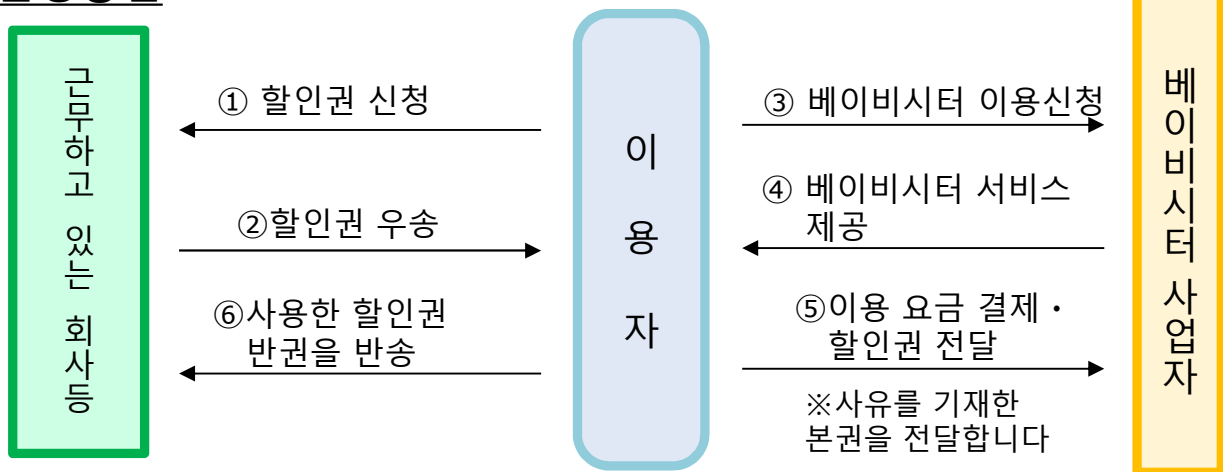
- ① 민간 기업 등에 근무할 것
- ②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한부모가정이라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 등을 할 것

■ 특례 조치 내용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휴원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평소>	⇒	<특례 조치>
· 1 일 최대 장수	1 장/인		5 장/인
· 1 달 최대 장수	24 장/가정		120장/가정
· 연간 최대 장수	280 장/가정		제한 없음

■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csa.jp/>



기업 주도형 베이비시터 사업자 이용자 지원 사업

(특례조치 :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분 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해, 초등학교 등이 임시로 휴교 등을 하게 된 경우, 개인적으로 일하는 보호자가 일을 쉬거나 방과 후 아동 클럽 등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의 이용 요금을 보조합니다.

■ 대상자

이하의①~③에 해당되는 분이 특례조치의 대상자입니다.

- ①개인적으로 일을 할 것(자영업, 프리랜서 등)
- ②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한부모가정이라 베이비시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일을 지속할 수 없을 것
- ③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 등을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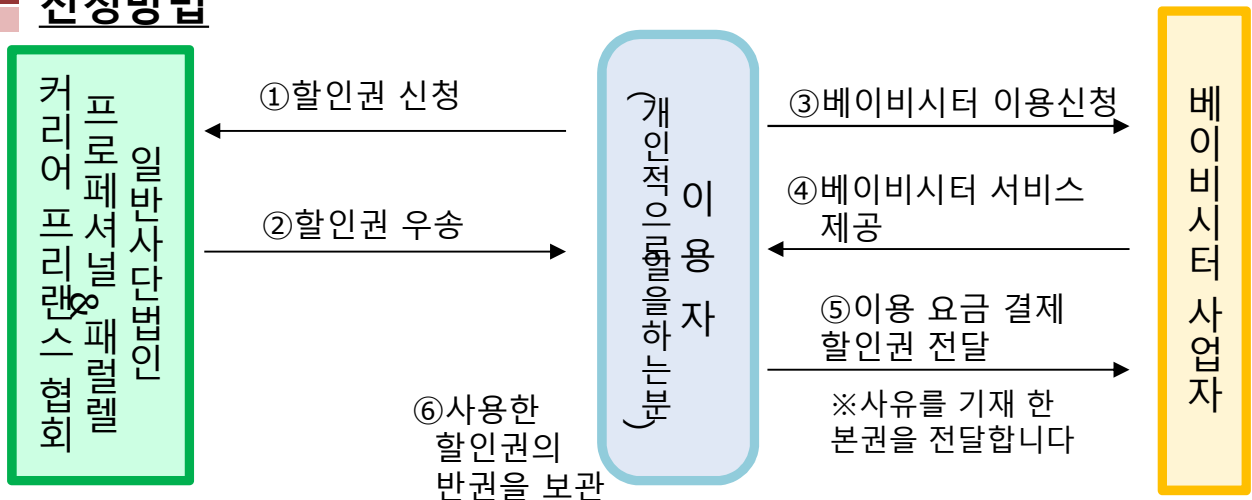
■ 특례조치 내용

초등학교 및 보육 시설 등이 임시 휴교·휴원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 (2,200 엔 / 장)을 지급합니다.

<특례 조치>

- 1 일 최대 장수 : 5장/아동
- 1 달 최대 장수 : 120장/가정
- 연간 최대 장수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자세한 내용은 전국 보육 서비스 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acsa.jp/>



그 외 관련 정보

코로나 관련 지원책 등에 관한 웹페이지를 안내합니다.

관계부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웹페이지에 대하여

- [후생노동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특설 페이지](#)



국민 여러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 상황과 고용 조정 보조금 등의 지원책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내각관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



국민 여러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는 사업자 등의 대책에 참고가 되는 독점금지법 및 하청법의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한 상담창구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대해](#)



각종 행정수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일으킨 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금융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정보](#)



자금유통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업자·개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청 신종 코로나 관련 소비자용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편승한 수상한 권유나 악덕 상술에 따른 트러블 등, 소비자로서 주의해야 할 정보와 소비생활 상담창구에 대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 [법무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특설 페이지](#)



국민 여러분과 재류 외국인 여러분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정보(법률문제, 인권문제, 재류신청·생활지원, 해외로부터의 입국 등)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일본 입국·재류 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재무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정책금융의 자금유통 지원책과 국제납부의 유예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농림수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농림어업자·식품 관련 사업자 여러분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관련한 정보(식품공급 정보, 외식 시 권고 사항, 지원책 등)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경제산업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감염증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안내합니다.

- [국토교통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국토교통성의 대응](#)



국민 여러분을 위한 공공교통기관 이용 관련 정보, 공공교통기관의 감염증 대책 등 정보, 국토교통관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메뉴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특설 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한 환경성의 시책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련 정보

코로나 관련 지원책 등에 관한 웹페이지를 안내합니다.

지원책 일람 팸플릿과 포털 사이트에 대하여

- [지원책 팸플릿\(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업자 분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업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팸플릿에 정리하였습니다.

- [문화예술 관계자를 위한 지원책](#)



문화예술 관계자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확산을 고려한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확산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 등의 여러분을 위해 활용 가능한 국가의 지원책을 정리하였습니다.

-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서비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와 일본 생활에 유용한 정보 등을 언어별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해외 출국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센터\(TeCOT\)](#)



경제산업성에서는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출국자가 목적지 국가의 요구 등에 응한 검사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색·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각종 지원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생활과 사업에 영향을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정리한 팸플릿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앱](#)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앱입니다.

- [농림어업자·식품관련 사업자를 위한 지원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농림어업자·식품관련 사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책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학생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일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학업이 어려워진 모든 학생분들과 관련된 경제적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영향에 대한 외국인 및 수용기관을 위한 지원책](#)



외국인분이나 외국인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수용기관의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외무성 해외 안전 홈페이지](#)



감염증 위험정보 변경에 따른 국경 방역 등의 변경 사항, 각국의 감염증 관련 위험정보의 발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항공편 운항 정지 등 출국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일본 사법 지원센터\(법 테라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관한 법적 트러블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COCOA\)](#)



접촉 확인 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감염자와 접촉한 가능성을 통지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입니다.